# 미국 민권운동의 어제와 오늘

서현진

"Freedom is not enough……We seek not just freedom but opportunity not just equality as a right and a theory but equality as a fact and as a result."
(President Johnson, 1965)

## 들어가는 말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건국 초부터 광범위한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었으며, 특히 개인적 권리의 확대와 집단적 권리의 조화는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으로 여겨져 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소수자들은 법적 평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평등권을 얻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아직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종적, 성적, 종교적 차별에 많은 미국인들이 저항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논쟁과 투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소수집단의 법적 차별 철폐와 동등한 기회의 보장 등 소극적 평등권 보장의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 평등 보장을 추구하는 소수집단 우대제도 정책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60년대에 적극적인 차별 해소정책인 소수자 우대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 권리보호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후 이 정책이 더 많은 소수집단에게 확대 적용되면서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였고 갈등이 더욱 복잡한 형태로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도 매우 대조적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원리 중 하나인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해 온 역사와, 현재 시민권을 둘러싼 쟁점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시민권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흑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평등권 투쟁 과정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수자 우대정책에 주목하여 이 정책의 도입목적과 법원의 판결과정을 정리해 보고, 학자들 간의 논쟁을 통해서 현재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찬반논의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찬반논의와 엇갈린 평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을 보장받으려는 수많은 다른 소수자들에게 이러한 역사와 현재의 정책적 논란은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슈에 대한 제고는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민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논란의 대상인 동성애자 집단에 대해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의미의 시민권 운동의 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반응을 파악하고자 한다.

## 민권운동의 역사와 소수자 우대정책

### 1. 법 앞의 평등과 민권운동

건국 초기 제정된 1787년 연방헌법은 흑인 노예를 3/5의 인간으로 인정하였고, 1857년 드레드 스콧 Dred Scott v. Sandford소송[1]에서 연방 대법원은 흑인

1 1847년 이 사건의 원고인 드레드 스콧은 그가 이전에 노예제도가 금지된 자유주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근거로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미주리 주 순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그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1848년 주 대법원이 그 판결을 번복시켰다. 이어 1853년 스콧은 미주리 주 순회 법원에 새 주인 샌포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흑인이고 노예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노예이기 때문에 미주리 주의 시민이 아닌 그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결국 소송이 기각되자, 스콧은 다시 연

은 미국의 시민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1861년 남북전쟁 결과 노예제를 폐지하는 수정 제13조(1865),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제14조(1868)와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15조(1870) 등 헌법 수정조항들Civil War Amendments이 비준되어 노예에게 시민으로서의 법적 평등을 보장하게 된다. 특히 수정 제14조는 법의 평등한 보호equal protection of the law를 규정하여 성별, 인종, 종교, 민족 배경 등에 의한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는 정치적 투쟁의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실상의 흑인 차별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흑백 분리segregation의 원칙을 담은 짐 크로우 법Jim Crow Laws[2]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1896년 플레시Plessy v. Ferguson 판결[3]은 분리와 평등separate but equal의 원칙을 전국적으로 제도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해 법적 평등을 보장할 뿐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해지게 된다.

1950년대에 오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다. 1954년 브라운Brown v. Board of Education 소송[4]에서 대법원은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 제14조에 근거하여 흑백이 분리된 학교는 평등

---

방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 재판에서 그는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드레드 스콧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의 남부와 북부의 지역적인 대립이 격화되어 가던 당시에 연방 대법원이 남부에 유리한 흑인노예제도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 남 · 북의 대립을 더 한층 격화시켰기 때문이다.

2 남북전쟁 후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획득된 흑인 민권을 역전시키고자 백인 중심으로 추진된 흑인차별법의 통칭. 짐 크로우 법은 흑백 공동식수 사용의 금지, 공공 운송수단에서의 흑백 구분 좌석, 투표에서 '문맹테스트'를 부과하여 흑인투표권을 무효화하는 사례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었다. "짐 크로우"는 가난하고 못 배운 흑인을 상징하는 인종주의적 표현.

3 1890년 루이지애나 주는 '철도 운행 시 흑백이 동등하지만 별도의 분리된 차량이나 구역에서 여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라는 법을 통과시켰다. 30세 제화공으로 흑인인 플레시는 백인 차량에 앉은 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퍼거슨 판사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1896년 연방 대법원에서도 '백인들의 시설과 동등할 경우에 흑인들에게 별도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4 1954년 5월17일 린다 브라운이라는 흑인 소녀의 아버지 올리버 브라운이 캔자스 주 토피카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학교통합을 요구한다는 판결을 하게 된다. 즉, 법의 평등한 보호조항은 1869년에 비준되었으나 사실상 인종차별의 금지는 브라운 사건 당시 1954년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브라운 판결에 힘입어 흑인 민권운동이 전적으로 전개되고 결국 1964년에 민권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당시 존슨 행정부는 흑인에게 법적 평등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민권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인 흑백차별의 철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의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즉, 소수자 우대정책은 수정 제14조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등장한 정책이다.

2. 적극적 평등과 소수자 우대정책

적극적인 차별 해소정책인 소수자 우대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 권리보호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된 목적은 1965년 존슨 대통령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듯이 소수자에게 자유만 주는 것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것이다. 흑인 노동자에게 고용의 평등권을 주려는 존슨 대통령의 첫 번째 정책적 시도인 필라델피아 플랜 Philadelphia Plan은 닉슨 대통령의 대선 당선과 함께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닉슨 행정부에 의해 이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하나는 노조와 흑인민권운동 진영의 연합에 의한 진보적인 민주당 연합형성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1969년에 있었던 흑인 데모와 폭동에 대한 닉슨의 위기관리 대처방안으로 이행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이행된 소수자 우대정책의 본래 목적은 흑인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과거 흑인들이 받은 제도적, 관행적 차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지원을 보다 많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자 우대정책은 다수자인 백인들의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즉,

백인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철폐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다수의 법적인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은 반대이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1970년대 대법원에는 이러한 역차별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일련의 소송들이 제기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예는 1978년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Regents v. Bakke 소송이다. 1974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 의과대학이 100명당 16명을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원주민 계열 입학생을 위해 할당하고 있었는데 이에 반발한 베키Bakke가 캘리포니아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이 입학생에 대해 명시적인 인종별 할당량racial quota을 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은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할 목적으로 인종을 심사조건에 포함시킬 재량권이 있으므로 소수자 우대정책 자체가 위헌은 아니며 이는 "다양성 추구"의 면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역사적으로 소수자 우대정책의 적법성을 인정한 가장 중요한 판결이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각 대학의 입학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소수자 우대의 범위와 종류 등에 대한 논란을 일게 하였다. 게다가 이에 힘입어 고용기회의 평등을 위해 직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소수자 우대정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많은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레이건 대통령은 반 소수자 우대정책을 펴게 된다.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논란은 레이건 정권기인 1980년대부터 매우 심화되었고 1990년대까지 일련의 소송들에서 대법원은 이 정책에 대해 비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 1986년 위건Wygant v. Jackson Board of

---

5 당시 비소수인종으로서, 학교교사로 재직하다 해고된 위건은, '최고 연장자는 해고대상이 아니지만 단 소수인종 교사의 해고비율이 소수인종 고용비율을 넘을 수 없다' 라는 학교규정으로 인하여 비소수인종 연장자 교사가 해고되는 결과를 빚는 것은 평등원리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ducation 소송[5]에서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당시 대법원장인 린퀴스트William Rehnquist는 특혜preferential treatment를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민권법의 범위가 소수자 우대정책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게다가 1996년 합우드Hopwood v. Texas 소송[6]에서 대법원은 텍사스 주립대 법과대학원에 다양성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성적과 대학 시험점수가 낮은 소수자 우대를 금지하는 케이스를 기각하였다. 대학 입학심사를 포함한 모든 주의 활동에서 인종적 특혜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률안 209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소수자 우대정책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 결과 중 하나는 버클리 대학의 흑인과 히스패닉 계통의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2003년 6월 23일 미시간 대학을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한 백인 3명이 소수자 우대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5—4로 미시간 대학의 소수자 우대정책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터Grutter v. Bollinger 소송은 미시간 대학교 법학 대학원Law Schools에 1997년 원서를 낸 그러터Barbara Grutter는 자신이 불합격된 것은 입학허가 기준으로 인종에 근거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학정책 때문이었으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유사하게 그라쯔Gratz v. Bollinger 소송도 미시간 대학 학부에 원서를 냈다가 불합격된 두 명의 백인 학생들(Jennifer Gratz와 Patrick Hamacher)이 입학허가 기준 총점 150점 중에 소수자나 빈곤계층의 지원자에게 20점의 가산점을 주는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두 소송에 대해 2003년 6월 23일 대법원은 1978년 Bakke 판결에서와 같이 인종을 입학허가 기준의 하나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우대정책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

6 1992년 시작된 사건으로 당시 체릴 합우드는 다른 소수인종 지원자들에 비해 더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허가가 거부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996년 그녀의 입장을 지지하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본 바와 같이 소수자 우대정책에 관한 일련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적이고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소수자 우대정책의 성과와 찬반논의—개인적 자유와 집단적 평등권의 논쟁**

비 일관적인 법원의 판결과 유사하게,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찬반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정책의 수혜 당사자들에 의한 평가를 보면 이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흑인과 여성은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고용과 교육 면에서 흑인과 여성 집단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고, 직장 내의 인종차별과 학교 내의 법적, 실제적 차별이 금지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즉,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소수자의 지위와 삶은 교육, 취업, 주거지와 소득수준 면에서 매우 호전되었다. 스테판Stephan과 선스트롬Thernstrom은 *America in Black and White: One Nation, Indivisible*(1997)에서 흑인은 여전히 가난하며 범죄율이 높고 입학 시험점수도 낮지만 흑인 중산층이 확대되는 등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한다. 1995년 현재, 전체 인구의 1/8이 흑인인데 반해, 살인 범죄 피해자의 반이 흑인이며 살인 용의자의 반 이상도 흑인이다. 평균 17세의 흑인 학생은 백인 13세 정도의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흑인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들은 1970년과 1995년을 비교할 때, 주거지에서의 차별이 감소하였고 1995년 현재 40% 이상의 흑인이 중산층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흑인 남성의 실업률이 감소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93%가 취업상태라고 지적하였다.

1960년대 중반 민권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에도 인종차별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인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1년 갤럽여론조사에 의하면 13%의 백인 응답자가 흑인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였다.[7] 1997년 갤럽여론조사에 의하면 77%의 응답자가 인종

간 결혼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고 답했고, 93%의 응답자는 흑인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즉, 현재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인종차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흑인들의 권리가 백인들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 정책이 지난 20년간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정책수혜자들의 평가와는 별도로 앞으로 이를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수자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은, 첫째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불평등을 지적한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은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 집단의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 또는 교육과 취업 기회의 불평등 형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현 실태를 보면 2000년 현재 백인의 평균수입은 $47,000이고 흑인은 $28,000이며, 백인의 8.6%와 흑인의 26.5%가 빈민층에 속하고, 25세 이상 백인 남성의 27.3%가 대학교육을 받은 반면 흑인은 13.9%만이 대학을 졸업했다. 또한 백인 남성은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년이 보장된 교수의 85%, 법조계의 85%, 미국 하원의원의 80%, 상원의원의 90%, 성공한 CEO 500인의 95%, 학교장의 97%, 스포츠 구단주의 99.9%, 미국 대통령의 100%가 백인 남성으로 구성된다.[8] 게다가 2003년 7월 현재 미국의 전체 실업률은 6.4%인데 흑인의 실업률은 11.8%나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정책 찬성자들은 미국에서 아직도 백인 프로테스탄트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흑인을 비롯한 다른 소수자들이 평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을 영위할 기회를

---

**7** 체코인들의 49%가 헝가리 소수민족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답했고, 45%의 서독인들이 터키인에 대해 반감이 있다고 했으며, 54%의 동독인이 폴란드인에 대하여, 40%의 헝가리인들이 루마니아인에 대하여, 그리고 42%의 프랑스인들이 아랍 이민자들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 McKay David, David Houghton, and Andrew Wroe, *Controversies 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2002.

갖기 위해서는 소수자 우대정책의 지속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복Dereck Bork과 보웬William Bowen은 *The Shape of the River*(1998)에서 이 정책은 많은 흑인들에게 고등교육과 고임금 직종에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법과대학원과 의과대학원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흑인의 수, 흑인 하원의원의 수와 행정부 관리의 수가 증가하였다. 쉬플러David Shipler는 *A Country of Strangers*(1997)에서 인터뷰를 통해 학교, 직장,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인종차별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는 흑백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지적하고, 아직도 흑인은 직장과 학교에서 장애와 편견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앞으로 소수자 우대정책이 없어진다면 현재 40~50명의 흑인이 입학하는 학교에 5~6명 정도의 입학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즉 소수자 우대정책으로 인해 많은 흑인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흑인 중산층이 확대되었고 평등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렇듯 흑인집단에 실질적인 혜택을 준 이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수자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의 목적이 소수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거나 백인에게 역차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회의 평등 보장임을 강조한다. 이들은 또 소수자 우대정책은 미국이 진정한 다민족국가이며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정책의 성과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997년 갤럽여론조사에 의하면 백인의 57%는 과거 30년 전에는 소수자 우대정책이 필요했으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답했다. 1996년 갤럽여론조사에 의하면 83%의 응답자가 취업이나 입시 때 주어지는 인종적 혜택에 대해 반대했다. 2000년 전국선거여론조사(NES: National Election

Studies)에 의하면 응답자의 55%가 흑인들에게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는 단지 16%만이 찬성하였다. 이렇듯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소수자 우대정책이 오히려 흑백차이를 부각시켜서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를 강화하며 미국적인 가치인 자본주의, 개인적 자유, 선택권의 측면에서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적 가치는 개인적 자유를 집단적 평등권보다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 있으며 강한 정부의 개인적 자유 침해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다. 앞서 언급된 베키 판결의 경우, 캘리포니아 의대 100명 중 16명은 소수인종에 할당되어 있는데, 이는 수정 제 14조에 의거 백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백인의 개인적 자유가 소수자의 집단적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 사회와 학교는 가장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일꾼과 학생을 원하는데 소수자 우대정책은 기회의 평등 보장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 보장이므로 능력과 경쟁력이 무시된다고 지적한다. 이 정책은 백인들의 불만과 편견을 고조시켰는데 백인들의 흑인 학생에 대한 이미지는 입학허가를 성취가 아니라 얻은 것not earned but granted 또는 인종이 곧 점수로 환산된다는 선입견을 낳아서 흑백갈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흑인의 자립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킹 목사의 의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9] 인종인식정책race-conscious policy은 결국 우리 대 그들이라는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백인들의 불만의 씨앗을 심은 정책이 되어 1992년 LA 폭동과 1994년 심슨O.J. Simpson murder trial소송[10]에서 본 것

---

9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민권운동을 이끌면서 "경주에서 뒤지고 있을 때,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는 길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처럼 흑백갈등을 심화시킨다. 그러므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종적 특혜를 제거하고 미국적 가치인 개인적 차이individual differences를 인정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소수자 우대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저학력층 흑인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흑인이라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테판과 선스트롬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입학한 흑인 학생들의 30%는 연간 $70,0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정 출신이었다. 1996년 이전까지, 흑인 학생은 자동적으로 소수자 장학금Minority Prize Fellowship을 받을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그 학생이 백만장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가능했다. 한편 저소득층 흑인의 상황은 이 정책의 시행 이전보다 악화되었다. 1967년과 1992년 비교 시 편모 저소득층 흑인가정이 늘어서 소득 수준이 저하되었고, 버클리 대학의 경우 저소득층 흑인가정 출신만을 대상으로 하면 흑인 학생의 등록률은 2/3가 저하되었다. 그러므로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이 정책은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해서 몇몇 소수자 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을 조장하여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소수자의 권리보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흑인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노력은 법적, 제도적 평등을 추구하는 전통적 영역에서부터 사회적, 정치적 평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오면서 수많은 논란

---

10 1994년 6월 12일 미국의 미식축구 영웅인 O. J. 심슨의 전처 니콜 브라운과 남자친구 로널드 골드만이 미 로스앤젤레스의 콘도미니엄에서 온몸이 난자당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심슨이 범인으로 지목돼 1년에 걸친 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았으나, 민사재판에서는 패배하면서 사실상의 유죄평결을 받았다. 심슨 사건은 미국재판에서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인종문제가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 주었다. 무죄평결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흑인 83%가 평결이 옳았다고 응답한 반면, 백인은 37%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을 야기하였고 매우 엇갈린 평가를 얻고 있다. 사실 적극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일관적인 의회법안으로 만들어져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 즉 대통령, 행정기관, 이익단체, 시민운동단체와 지도자 등에 의해서 제기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현실적 여건에 따라 수정되면서 부분적으로 발전되어 와서 각 주,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 정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기 어렵고 비판자들의 주장에서 보았듯이 이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점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흑인들의 권리보호와 평등권 추구의 역사를 비롯한 현재의 논란은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받으려는 또 다른 소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새로운 소수자 집단의 민권운동－동성애자의 평등권을 둘러싼 논쟁점**

소수자 우대정책은 흑인 집단을 넘어서 여성 집단에게 확대 적용되어 오면서 본래 목적이 정의실현을 위한 소수자 우대제 도입에서 다양성 추구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인종과 성별에 근거한 소수자 우대정책race- and gender-based affirmative action은 다시 계층에 근거한 소수자 우대정책class-based action으로 전환되어 이제까지 제외되어 온 백인 빈곤층과 다른 소수자까지 포함하는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법적으로 언더클래스에 속해 있던 더 많은 소수자 집단이 제도권inclass으로 진입하기 위한 권리보장 투쟁에 가세하게 된다. 이렇듯 이 정책의 본래 목적이 변화되어 더 많은 소수집단에게로 확대 적용되면서 인종과 성별, 계층이라는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현재는 평등한 시민권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동성애자

집단이다. 동성애자의 시민권 보장문제는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 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4년 미국 대선에서도 이 문제는 미국 유권자들 간의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동성애자 민권운동은 새로운 소수자 집단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요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인종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쟁이 소수자 우대정책을 둘러싼 적극적 평등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 동성애자 문제는 법적 차별금지를 위한 소극적 평등권 보장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고 도덕적, 종교적 가치를 둘러싼 이념 논쟁으로 발전되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헌법에 의해 흑인이나 여성처럼 소수자 집단으로 인정되고 다른 소수자 집단과 동등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인종이나 성별처럼 동성애가 불변의 신체적 특성이며 동성애자들이 차별의 역사를 경험했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무력한 약자 계층임을 증명해야 한다. 동성애자 민권운동가들은 동성애자들이 흑인이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다수 집단으로부터 편견, 멸시와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 집단이며 정치적 약자이고 동성애는 타고나는 불변의 특성이기 때문에 수정 제14조에 근거하여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1]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동성애자들이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제도적인 차별을 받은 역사적 경험이 없고, 이러한 차별의 결과로 인해 현재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에 속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약자라고 할 수 없으며, 동성애가 불변의 신체적 특성인지의 여부도 모호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적용하되 흑인에게 부여한 것만큼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반 대중의 여론도 이와 유사하다. 동성애자를 흑인이나 여성과 같은 동등한 소수자 집단으로 볼

---

**11** Evan Gerstmann, *The Constitutional Underclass: Gays, Lesbians, and the Failure of Class-Based Equal Prote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p.95.

것인지, 이들에게 소극적 평등권만을 보장할 것인지 또는 다른 소수자 집단에게 부여한 것과 같은 수준의 평등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동성애자에 관한 서구 문화는 이를 거부하거나 제도적 차별과 처벌을 승인하는 문화이다. 미국의 경우 건국 초기부터 종교적으로 동성애를 악으로 간주하고 합법적으로 동성애자를 처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종교적인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도덕성에 대한 반감이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

동성애자의 시민권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동성애자 권리보호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이다. 1950년대 캘리포니아 주를 기점으로 동성애자들은 사회단체(일명, Mattachine Society)를 형성하고 원One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는데 미 체신국은 이를 음란물 배포금지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우편서비스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동성애 단체가 대법원에 항의하여 승소한 소송(One, Inc. vs. Oleson, 1958)이 최초로 대법원에 수용된 동성애자 민권소송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흑인시민권운동과 여권신장운동 등 민권운동에 힘입어 동성애자 권리보호운동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967년 바우틸리어Boutilier v.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소송[12]에서 대법원은 동성애자를 정신병적 인성을 가진 자로 규정한다. 이후 동성애자 단체는 의학계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활동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1973년에 미국 정

12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캐나다 출신 바우틸리어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와 관련하여, 그가 동성애자('게이')였다는 사실이 논쟁이 되었던 사건.

신과학회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동성애를 정신적 이상 항목에서 삭제하였다. 한편 1969년 스톤월 저항사건은 뉴욕 시에 있는 동성애자 바인 스톤월인the Stonewall Inn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3일간 저항운동을 벌여서 동성애자 민권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소수자 그룹으로 세력을 조직화하고 시민권 확대를 위한 운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동성애자 권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동성애자 권리보호운동이 활성화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동성애자 문제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며 몇몇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법적 성과도 얻지 못했다. 특히 1980년대는 레이건 행정부와 공화당 집권 시기로 보수적 정치 환경이었는데 에이즈AIDS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동성애자들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심화되었다. 대법원은 동성애자에 관한 논의와 상정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회피 또는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 예로 1986년 바워Bowers v. Hardwick 소송[13]에서 대법원은 조지아 주의 동성애 금지법Anti-Sodomy Laws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1990년대에 들어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보호문제를 정치적 이슈화함과 동시에 법적 권리 획득에 주력했다. 이들에게 동성애의 합법성 보장이나 정체성 규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법적 보호를 획득하는 일이었다. 1996년 연방 대법원은 로머 Romer v. Evans소송[14]에서 고용차별금지에 반하는 콜로라도 주법의 수정조항

---

**13** 하드윅은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한 게이바에서 바텐더로 일했고, 자신의 방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한 죄로 체포됨. 바워는 당시 조지아 주 검찰총장.

**14** 1980년대와 90년대에 동성애자 권리보호운동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는데 주 또는 시차원에서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local ordinances)을 채택하고 있었다. 콜로라도(Colorado)는 이러한 주들 중에 하나였는데 대부

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성애자의 시민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것이었다. 기본적인 대법원의 입장은 동성애자의 권리가 인종과 여성차별의 선례에서처럼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수 집단과 동등하게 법적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고용 평등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동의는 법적 권리가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실제적인 정책으로 전환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권리는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지 고용 평등권을 넘어 다른 범위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며, 인종이나 여성 집단처럼 소수자 우대정책 등 적극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성애자 권리보호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특히 동성애자의 법적 권리를 확보함에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임을 인식하여 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렇듯 동성애자 단체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동성애의 합법성, 동성애자 결혼의 합법성, 아이 입양권 등 전반적인 평등권의 보장을 목표로 사회적 반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혼과 가족제도 등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가치와 관련된 이슈들은 쉽게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

---

분의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주 법령을 반대하고 있었다. 콜로라도 주의 유권자 대부분은 국민투표에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어떠한 법안의 통과도 금지하는 1992년에 만들어진 주 헌법의 수정조항에 찬성하는 쪽으로 표를 던졌다. 이 수정조항에 의해 동성애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직장 내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1964년 이래 소수인종에게 보장되어 온 특별한 법적 보호(specific legal protection)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콜로라도 주의 많은 시에서 기존의 동성애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들이 폐지되었고 지방정부나 주차원에서 향후 동성애자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법령 제정도 금지되었다. 이에 대해 동성애 단체가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이 콜로라도 주 수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판결을 연방 대법원에 호소하게 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1996년 로머소송(Romer v. Evans)에 대해 콜로라도 주의 수정조항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animus)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헌법 수정 제14조의 법의 평등한 보호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 6월 26일,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텍사스 주의 동성애 금지법Anti-Sodomy Law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동성애를 합법적인 관계로 인정하였다. 즉, 대법원은 수정 제14조에 의거하여 동성애자들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사생활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주 당국은 그들의 사적인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1986년에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조지아 주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워 판결을 뒤집고 텍사스 주의 동성애 금지법은 법의 정당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수정 제14조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은 그동안 동성애 허용 여부를 둘러싼 미국적 가치의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획기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한다거나 동성애자의 시민적 결합을 합법화하고 동성애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성애자 단체들은 이 판결이 반차별적인 주법을 폐지함으로써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어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수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동성애자 가족법과 결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보수 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가족과 결혼제도의 근간이 파괴될 것을 우려하였고 부시 대통령도 동성애자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결혼은 남녀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엄격한 정의를 법률로 성문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수주의자들의 동성 간 결혼 반대운동의 시작은 교황청의 동성 결혼과 아이 입양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과 결혼 허용 반대운동에 대해 동성애자 단체는 인권차별을 성문화하려는 기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의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전환점이 되었고 동성애자의 권리보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증대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동성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용 평등권과 동성애의

합법성을 인정하였을 뿐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한 동성애자 권리문제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연방헌법에는 동성애자의 권리에 관한 어떤 문구도 명백하게 또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1970년대 이래 연방 대법원에 제기된 동성애자의 법적 평등권 보장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여러 방면으로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추세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직까지 부분적인 성과만을 거두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동성애자 권리보호문제는 거센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권 보장은 항상 핵심적인 논쟁의 주제였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은 다양한 의미의 시민권과 정책을 요구하였고 그 내용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그칠 줄 몰랐다. 적극적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수자 우대정책은 흑인 집단을 넘어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소수자 집단에게 확대 적용되어 왔다. 본래 목적인 정의실현을 위한 소수자 우대제 도입에서 다양성 추구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고 인종과 성별에 근거한 소수자 우대정책은 다시 계층에 근거한 소수자 우대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법적으로 언더클래스에 속해 있던 많은 소수자 집단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민권운동에 가세하게 된다. 더 많은 소수자 집단이 평등권 보장을 둘러싼 투쟁에 가담함으로써 갈등이 더욱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도 심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동성애자 집단인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포함한 동성애 이슈는 인종문제와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동성애자의 법적 권리보호문제는 다른 소수자 문제와 달리 소극적 평등권 보장에 대해서조차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첫째, 동성애자 권리보호문제는

다른 소수자문제와는 달리 인간의 기본권 외에 도덕적 가치판단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찬반논의가 첨예한 시점에서 동성애자가 인종이나 여성 등 기존의 정치적 소수 집단처럼 인정될 경우 이들에게도 이 정책의 혜택이 확대 적용될 것을 우려하는 사회적 반감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의 권리보호문제는 보다 많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난제를 안고 있으며 이미 해결한 문제보다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현재의 법적 차별금지 보장을 위한 투쟁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흑인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투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브라운 소송이 흑인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 것처럼 로머 소송은 앞으로 의 동성애자 평등권 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최근 로렌스 판결[15]로 인해 향후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도 법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재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동성애자문제에 불을 붙인 로렌스 판결은 기존의 소수자문제와는 달리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상충된 이슈들을 해결해 나갈 실마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해석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의 평등권을 보장할 뿐 실질적인 평등권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인종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적인 장치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수용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구체적 정책으로 이행되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다. 미국 민주주의는 상이하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논쟁과 충돌을 수용하고 균형을 모색하여 합의에 도달하면서 발전했다.

---

**15** 1998년 자신의 집에서 성행위를 한 로렌스가 동성 간 성행위 위반법으로 체포된 것에서 시작된 사건.

아직도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미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동성애자 이슈들은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을 낳으며 논쟁의 순환을 거듭할 것이다.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갈등의 타협적 해결과 다양성을 표방하는 미국 사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되며 그 해결과정은 미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 줄 것이다.

끝으로 미국적 경험의 점검이 한국 정치가 당면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한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잘 보장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민권과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개별적 시민권은 다를지라도, 집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본적 시민권 보장은 전 세계가 당면한 정치적 난제이다. 한국도 점차 소수자의 기본권과 평등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평가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인종이나 민족갈등이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다양한 소수자 권익보호가 선진 복지국가로의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적 난제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단순한 법적 권리들에 대한 언급과 제도적 보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수단과 일상적 삶을 통해서 권리보장이 실행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서현진** jin2004@sungshin.ac.kr | 미국 퍼듀대 정치학 박사(비교정치 전공).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연구원, 경희대 시민사회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